

마케팅 규정

제 정 2023. 5.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6조, 제26조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케팅 자산의 활용 및 보호 등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케팅”이란 위원회의 마케팅 대상(국민, 상업권자, 잠재 상업권자 등) 사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치의 교환을 위하여 상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유통(Place)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마케팅자산(Marketing Asset)”이란 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선정, 개최, 주최, 주관, 파견, 관리, 소속 또는 운영하는 모든행사 및 시설 등 참가자와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마케팅자산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마케팅자산과 관련한 명칭, 상표, 서비스, 업무표장, 저작물, 디자인, 이미지, 엠블럼, 로고, 기타 상징, 표어(슬로건, 모토 등) 등 이러한 것들로 파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4. “상업적 권리(Commercial Right)”란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위원회에 후원금, 로열티 등 대가를 지급하고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마케팅 자산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 후원권, 상품화권, 매체권 등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지식재산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명칭 사용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말한다.
6. “후원권”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7. “상품화권”은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계약으로 정해진 종목, 범위, 방식 등에 따라 상품광고·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매체권”은 위원회 주최(주관) 행사 등에 대하여 마케팅 자산 및 지식재산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웹캐스트 포함),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방송, 전송, 배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마케팅 대행”이란 위원회가 유관단체 또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마케팅 사업) ① 위원회는 마케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마케팅 사업을 직접 또는 대행사나 자회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 가. 후원권자의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 나. 후원권자의 유치와 계약
 - 다. 후원권자의 후원권 이행, 지원 및 관리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 가. 상품화권자의 상업적 권리의 사용권 부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 나. 상품화권자의 유치와 계약
- 다. 상품화권자의 상품화권 이행, 지원 및 관리
- 3. 매체권에 관한 사업
 - 가. 매체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과 조정
 - 나. 매체권자의 유치와 계약
- 4.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시설 및 행사 등에 관한 사업
 - 가.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마케팅
 - 나. 이벤트 및 관련행사 등 개최와 운영
- 5.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
- 6. 유관단체와의 마케팅 관련 사업
 - 가. 유관단체와의 마케팅 계약 등
 - 나. 유관단체와의 공동상업권자 모집 등
- 7. 마케팅 대행 사업
 - 가. 유관단체 마케팅 대행 또는 자문
 - 나.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대행 또는 지원
- 8. 마케팅 자산의 등록,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 9.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마케팅 전문회사를 대행사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케팅 수익 등의 사용) ① 위원회는 상업권자의 후원금이나 로열티, 매체권료 등을 포함한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을 위원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위원회 복지증진에 사용한다.

② 위원회는 마케팅 사업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수익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상업권자의 권리) 상업권자란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말하고,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업적 권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가진다.

제6조(후원권자의 권리) ① 후원권자는 제2조 제6호에 따른 후원권을 가진다.

② 후원권자는 후원규모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후원 권리와 내용은 후원 계약에 따른다.

제7조(상품화권자의 권리) 상품화권자는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품화권을 가진다.

제8조(매체권자의 권리) ① 매체권자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매체권을 가진다.

② 매체권자는 매체권 이용 시 위원회의 후원권자 또는 상품화권자의 광고물과 상품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 ① 위원회의 상업권자 선정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업권자 선정의 목적·계약규모 등 마케팅 업무의 특성과 위원회 계약 규정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상업권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기존 상업권자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업권자가 기존 계약에 따라 우선협상권을 보유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상업권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신의성실로 계약이 정하고 있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위원회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상업권자의 의무) ① 상업권자는 위원회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업권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원회와 마케팅 자산의 품위나 명성, 이미지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매복마케팅의 금지 등) ① 상업권자가 아닌 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마케팅 자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위원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자신 또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 자산과 연계하여, 위원회 행사 등의 참가자에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위원회가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주최(주관) 행사 참가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회 자산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 없이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행사 참가자 등 관련 위원회의 권리) ① 위원회 주최(주관) 행사 참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위원회에 귀속된다.

1. 행사의 공식 복장을 착용한 초상, 성명, 이미지 등
2. 행사참가(리허설, 인터뷰 등) 등에서 얻어진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

② 행사에서 출입증(AD 카드 등)으로 행사장 안에 들어온 관중 및 기타 관계자의 초상에 관한 권리는 위원회가 보유하거나 행사한다.

제14조(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회 주최(주관) 행사 참가자는 위원회의 공식복장과 용품을 착용한다. 위원회의 공식 복장과 용품을 착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이 규정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행사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행사 참가자 또는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행사기간에 국내에서 이 규정 제12조1항과 관련된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이 본 조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동마케팅) ① 위원회와 유관단체는 각 당사자의 마케팅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다.

② 공동마케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와 유관단체 간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다.

제16조(마케팅 대행 등) ① 위원회는 유관단체 및 위원회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의 마케팅을 대행 또는 지원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케팅 대행 또는 지원의 수수료 및 세부내용은 위원회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부 칙 <2023. 5. 3.>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